

통지번호 :	호
가 동 중 지 표 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하니 안전·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설 가동을 재개하여야 하며,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	
가동중지 대상	
가동중지 사유	
가동중지 기간	20 . . . ~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
년 월 일 유역(지방)환경청장 현장수습조정관 (인) ※ 표지에 통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, 이 표지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. ※ 문의전화 :	

주) 1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글자의 구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	색상
가 동 중 지	16×16(mm)	돋움체	빨강
유역(지방)환경청장	6×6(mm)	"	검정
나 머 지	4×4(mm)	"	"
※ 이표지는 ~	4×4(mm)	"	빨강

2.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×185(mm)를 기본으로 2~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3. 테두리띠는 두께 8(mm)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.